4.3.14 학생해외교류에관한규정

제정 2001. 02. 28.
개정 2010. 10. 21.
개정 2012. 01. 30.
개정 2014. 11. 03.
개정 2016. 02. 18.
개정 2016. 11. 15.
개정 2018. 12. 04.
개정 2020.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환학생의 파견 및 초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강의 수강 및 학점 교류 등의 목적으로 상호 대학에 파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환학생심의위원회) ① 교환학생의 파견 및 초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환학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연구처장, 국제교류교육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수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 국제교류교육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1.15., 2020.00.0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학생의 외국 대학 수학 승인
2. 외국대학생의 우리 대학 수학 승인
3. 외국대학 취득 학점 인정
4. 장학금 등 지원 사항
5. 외국대학생의 수강료
6. 기타 학생 해외교류에 관한 주요 사항

제 2 장 본 대학교 교환학생의 파견

제4조(자격) 본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본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은 편입 후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개정 2010.10.21. 2016.02.18〉

②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6 이상인 자(편입생은 전적대학 평점 포함). 단, 국제학과 소속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1.15., 2018.12.04〉

③ 상대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실력요건 구비자

1. 독일 알렌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괴테어학연구소 독일어 기초학력 증명시험을 통과한 자. 〈개정 2010.10.21.〉
2. 중국 교류협력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중국어 수강이 가능해야한다. 단, 국제학과 이외 학과 학생의 경우 신HSK 2급 이상 혹은 본교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중국어 특강을 수료한자. 〈개정 2010.10.21., 2014.11.03., 2016.11.15., 2018.12.04〉
3.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와 인디아나주립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른다. 단, 본 대학 파견 교환학생은 IBT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30., 2014.11.03〉
4. 미국 루이스클락 주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와 루이스클락 주립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른다. 단, 본 대학 파견 교환학생은 IBT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11.03〉

④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⑥ 삭제 〈2014.11.03〉

⑦ 삭제 〈2016.11.15〉

⑧ 삭제 〈2016.11.15〉

제5조(모집공고) 교환학생 모집요강은 해당 시기마다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신청방법)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기일까지 ~~해당 부서~~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0.00〉

1. 교환학생 지원서[별지서식 제1호]
2. ~~전 학년~~ 성적증명서(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개정 2020.00.00〉
3.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혹은 본교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중국어특강 수료증 〈개정 2010.10.21., 2016.11.15., 2020.00.00〉
4. 수학 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5. 기타 필요서류

제7조(선발절차) ① ~~해당학과에서는 교류분야 및 인원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파견 교환학생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교환학생심의위원회에 선발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0.10.21., 2020.00.00〉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한~~ 교환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의·의결을 실시한다~~ 심의한다.〈개정 2010.10.21.,2020.00.00〉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심의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개정 2010.10.21.,2020.00.00〉

제8조(선발기준) 선발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전 학년 평점평균, 해당 외국어 실력, 면접 결과, 수학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9조(장학금 등) 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해당 대학과의 교류협약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동안 등록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1〉

②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장학금을 포함하여 교내장학금의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한 등록금이 파견대학에 납부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1.30.〉

제10조(등록 및 휴학) 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환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환기간 동안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체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삭제 〈2010.10.21.〉

제11조(출국 및 귀국보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출국 1개월 전에 출국신고서[별지서식 제3호]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고 지정된 교환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귀국보고서[별지서식 제4호]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0.10.21, 2016.11.15〉

제12조(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하는 과목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이 교환기간 동안 외국 교류협력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0.10.21.〉

1. 교환학생이 교환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는 본 대학교의 수업 연한에 포함된다.
2.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교류 협력대학 취득학점은 학기당 1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이수구분은 국제학과 학생의 경우 전공선택으로, 그 외 학과 학생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단, 교류협력대학 이수과목 중 F학점 1과목당 2학점씩 미인정) 〈개정 2010.10.21, 2014.11.03., 2016.11.15., 2018.12.04〉
3. 삭제 〈2016.11.15.〉
4. 교환학생이 교환기간 동안 외국교류 협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신설 2018.12.04〉

제 3 장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초청

제14조(교환학생의 심의) ① 외국 교류협력대학에서 추천하는 교환학생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환학생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0.10.21〉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학부(과) 배정 및 본 대학교 수학기간 동안의 대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5조(교환학생의 관리 등) ① 소속 학부(과)에서는 교환학생에게 지도교수를 지정해주고 수강신청 등 제반 학사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환학생은 지정된 교환기간 동안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숙소 마련 등 교환학생의 생활편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과목의 이수 등) ① 외국 교류협력대학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와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과

목을 정하고 각 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1.〉

② 매학기가 종료되면 외국 교류협력대학 교환학생의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0.21〉

제 4 장 공통사항

제17조(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제경비)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환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에서의 등록금은 양측의 협정에 따르고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소요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양 대학교의 협정내용이 이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제19조(적용규정) 교환학생에 관하여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교환학생지원서 〈개정 2016.02.17.〉 No.

교환학생지원서

결재	담 당	계 장	과 장	처 장	총 장

성 명 *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	(한글)	생년월일	
	(한문)	E-mail	
	(영문)	학번(학년)	(학년)
소 속	계열	학부(과)	전공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군필여부	□ 유 □ 무	여권소지여부	□ 유 □ 무 * 유효기간 : 년 월까지
총취득학점	학점	평 점 평 균	/ 4.50
외국어성적	* 시험명 :	* 성적 :	
희망수학대학		학과(전공)	
희망수학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개학기)		

보 호 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직장명		직 위	전 화	

본인은 초당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참가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하며,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초당대학교 학생신분에 맞는 언행과 생활태도로 학업에 열중할 것과 외국대학 수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파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붙임 : 1.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3. 수학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경유	지도교수	학부(과)장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제2호) 교환학생수학계획서

교환학생 수학계획서

성 명		학번(학년)	(학년)
소 속	계열	학부(과)	전공
수학희망대학		학과(전공)	
수학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제출일자	

(서식 제3호) 교환학생출국신청서

교환학생 출국신고서

성 명		학 번 (학년)		(학년)	
소 속	계열		학부(과)	전공	
수학예정대학			학과(전공)		
귀국예정일자					
외국현지연락처 (해당자만 표기)					
여권번호		비자취득여부	□ 취득 □ 미취득		
항 공 권 예약상황	* 항공사 :		* 편명 :		
	출 발 시 간				
	현지도착시간	(도착공항명:)			
본교등록여부	등 록 필	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등록미필	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보호자 (등록관계 대리인)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직장명(직위)		전화		

본인은 교환학생으로서 위와 같이 출국할 것을 신고하며 파견기간동안 해당학기에 초당대학교에 등록을 필할 것과, 양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국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보호자 :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 출국 전 기납부한 등록금영수증의 사본을 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파견기간동안에는 대리인이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후 영수증사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4호)교환학생귀국보고서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성 명		학 번 (학년)	(학년)
소 속	계열	학부(과)	전공
주 소			
전 화		호출기(핸드폰)번호	
E-mail			
수학대학		학과(전공)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개 학기)		

이수과목 및 학점	학년도 학기			학년도 학기		
	과 목 명	학점	성적	과 목 명	학점	성적
	총 과목 학점 이수			총 과목 학점 이수		

본인은 교환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였음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1부
2. 교환학생체험기(작성방법 참조) 1부

년 월 일

신고인 :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 교환학생체험기 작성방법

교환학생체험기는 앞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안내 자료로 사용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교환학생 참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한없이 자세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성명, 학번, 전공, 연락처 등)
2. 수학내용(수학대학명, 학과(전공)명, 수학기간 등)
3. 출입국관련 유의사항(비자취득, 항공권구입, 짐송부방법, 환전, 출입국신고, 외국인등록 등)
4. 교통(공항에서 학교까지의 교통편, 요금, 소요시간, 학교에서 주요장소로의 교통,시내교통 등)
5. 학교안내(수학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본교대비 학제상의 상이점, 학교규모 및 시설, 면학분위기 등)
6. 환경(위치, 주변환경, 기후 등)
7. 숙소(기숙사시설, 비용, 이용규칙, 분위기, 유의사항, Homestay 이용현황 등)
8. 음식(학교식당 이용현황, 학교주변 식당현황, 가격 등)
9.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제도 (교환학생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지도 교수, Counseling, 제공시설 등)
10. 수업(수업방법, 교수, 과제, 평가, 수업준비 등)
11. 대인관계(교우관계, 지역사회 등)
12. 수업외 활동(교내활동, 교외활동)
13. 소요경비(현지물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도서비, 공공요금, 총소요경비 등)
14. 관광, 여행
15. 출국전 준비해야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
16. 귀국준비시 유의사항
17. 건의사항
18. 차기 교환학생을 위한 제언
19. 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
20. 기타
21. 사진첨부(현지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22. 외국대학 안내자료 첨부(과목개요, 대학안내 등)